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46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황정아 · 최민희 · 진성준
강준현 · 이주희 · 권향엽
장종태 · 김 현 · 이용우
박 정 · 이건태 · 박용갑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2024년에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가 조정되고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과 연구생태계 위축이 심화되는 등 기초연구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미비하여, 기초연구 투자가 경기변동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지원 강화,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초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정부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국가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원 및 연구환경 개선

제8조 중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를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 및 고도화 지원
2.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 인프라의 구축 및 고도화 지원
3. 정규직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의 확충 및 지원
4. 그 밖에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소를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이하 “국가기초과학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기초연구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현황

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 ----- ----- -----. ② 국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

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
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 8. (생략)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
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
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연구장
려금 지원 및 연구환경 개선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1.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 및
고도화 지원

2.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 인프
라의 구축 및 고도화 지원

3. 정규직 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의 확충 및 지원

4. 그 밖에 대학의 기초연구 역
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제8조의2(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세계적 수

<신 설>

준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소를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이하 “국가기초과학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기초연구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연구분야의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신 설>

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
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운

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
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